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88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이학영·김교흥·정준호

문금주 • 문정복 • 이정문

안호영 · 강득구 · 임호선

김성환 · 김영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대한 민국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등에게 출국의 금지를 명령하고 있음.

그런데 일각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도피성 출국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려는 긴급 출국금지 명령이 법정다툼에 휘말리는 등 사법 행정력의 낭비와 권위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보고되어,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및 조사 회피 행각을 근절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내란과 외환, 반란 등 중차대한 범죄의 경우 국가안정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혐의자 및 그 동조자에 대한 신병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형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군형법」 제2편제1장의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즉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법률 제 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렁으로 정하는"을 "「형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군형법」 제2편제1장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 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 제4조(출국의 금지) ① ----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 6. 「형법」 제2편제1장과 제2 장, 「군형법」 제2편제1장의 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 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 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 <u><신</u>_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 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 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 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 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